

## 이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 2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□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과 관련 시민에게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문화의 집에는 문화정보자료실, 문화다목적실, 문화창작실, 문화연습실, 기타 문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문화의 집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·단체·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위탁시설에 대하여 운영·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시비로 보조할 수 있으며,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시설의 이용료 징수, 이용허가·제한·변경, 이용자의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(안 제7조).
- 마.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(안 제10조).

(제38회 - 2차 자치행정위원회)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소재지)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소 재 지
장호원문화의 집	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-21 (장호원읍사무소 내)

제3조 (시설)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.

1. 문화정보자료실
2. 문화다목적실
3. 문화창작실
4. 문화연습실
5.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 및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4조 (시설활용) 문화의 집은 제3조에 의한 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각종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시설의 운영 · 관리) ①문화의 집은 시장이 운영 ·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·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· 단체 · 개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중 적극적이고 운영 · 관리 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· 감독을 받는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위탁신청과 수탁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6조 (운영 · 관리비용)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·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보조가 시의 재정상 곤란할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제7조 (이용허가등) 제6조제2항의 이용료징수와 문화의 집 이용허가·제한·변경, 이용자 범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이 경우 본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문화의집을 운영·관리할 때에도 적용한다.

제8조 (원상복구) ①문화의 집 이용자 및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 및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하였을 때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(위탁운영에 경우 이용자는 수탁자에게)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이용자 및 수탁자 소유의 철거물은 시장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10일이내에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9조 (이용자의 손해배상) ①이용자 및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·운영·관리중 문화의 집의 시설 및 시설물을 망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제1항의 망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의 행위의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10조 (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·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